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2일

3. 제안이유

- 고등교육법 개정(2011. 7월)에 따라 전문대학도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 사용 가능
- 전국7개 도립대학 중 전남도립대학을 시작으로 강원도립대학까지 4개 도립대학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교로 교명변경 추진
- 전국 도립대학의 추세를 반영하여 교명변경을 통한 대학의 위상과 이미지 쇄신 필요
- 그간 추진사항
 - 의견수렴(직원, 학과, 총학생회, 평의원회, 교무위원회) : 2018. 8.22.
 - 도지사 승인 : 2018. 8.23.
 - 제367회 도의회 사전동의안 의결 : 2018. 9.19.
 - 교육부 교명변경 인가 신청 : 2018. 9.28.
 - 교육부 교명변경 최종 인가 : 2018.10.22.

4. 주요내용

- 조례제명 및 조문의 교명 변경
 - (현재) 충북도립대학 (변경) 충북도립대학교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고등교육법」 개정에 따라, 전문대학도 대학교라는 명칭사용이 가능하게 된 바, 기존 ‘충북도립대학’을 ‘충북도립대학교’로 변경하여 학교의 위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.

□ 고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대학
2. 산업대학
3. 교육대학
4. 전문대학
5.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“원격대학”이라 한다)
6. 기술대학
7. 각종학교

제18조(학교의 명칭)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1. 7. 21.]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조례 제명과 안 제1, 2조에서는 「고등교육법」 제8조에 따라 ‘충북도립대학’을 ‘충북도립대학교’로 변경하였고,
- 안 제1조에서는,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법령입안·심사기준(법제처)에 따라 약칭규정을 삭제하였으며,
- 안 제2조에 “충북도립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“는 약칭규정을 포함하였음.

- 안 제4조제3항은 안 제2조의 약칭규정에 따라 “충북도립대학”을 “대학”으로 변경하였고,
- 부칙 제2조에서는 학교 명칭 변경(‘충북도립대’ → ‘충북도립대학교’)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 -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 → 제명, 제1조, 제2조제2항
 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→ 제15조제1항
 -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→ 별표
 -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→ 제4조제2항제2호가목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었고, 전국 7개 도립대학 중 이미 4개 도립대학((강원, 충남, 전남, 경북)이 교명을 대학교로 변경한 바, 충북도립대의 교명 변경은 시기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고등교육법」 제8조에 따라 기존 학교 명칭인 ‘충북도립대학’을 ‘충북도립대학교’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이 없음.